

이 영 순 의원

1. 보안 수사국 관련 자료 요청

1. 보안 수사국 수사 장비 보유 현황
2. 보안수사국 수사장비 폐기 현황
3. 2005년도 보안 수사국 수사 장비 예산 요구 내역
4. 지방청 보안 수사 장비 보유 현황
5. 지방청 보안 수사장비 폐기 현황
6. 2005년도 지방청 보안 수사 장비 예산 요구 내역
7. 지방청 보안, 외사 참고인 배상금 지급 현황

담당자 : 보안1과 경사 문기백 (313-4197)

1-2, 4-5. 보안국(지방청) 보안수사장비(폐기) 현황

보안 수사장비(폐기)현황은 보안수사 역량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구체적 내역 공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보안 수사국 수사 장비 예산 요구 내역

장 비 명	구입대수	단가	예산액	비 고
저조도디지털 줌카메라	25대	3,744,000	93,600,000	조도(빛)가 미약하고 원거리 채증대상에 대한 촬영장비
모바일 원격 촬영시스템	34대	2,153,000	73,202,000	원거리 무선 원격 조정을 통한 촬영 장비
탈착식 저장장치	44대	280,800	12,355,000	채증 데이터저장장치
합 계			179,157,000	

6. 2005년도 지방청 보안 수사 장비 예산 요구 내역

각 지방청별 보안 수사장비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음

7. 지방청 보안 참고인 배상금 지급 현황

지방청별 참고인 배상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방청별	년도	사건내용	참고인	조사내용	사건관계 내용	조사일수	지급금액	비고
서울청	2002	남북교류법	김00	참고인조사	참고인	1	18,480원	
	“	“	한00	“	“	1	18,480원	
	“	“	박00	“	“	1	18,480원	
	2003	남북교류법	한00	“	“	1	18,480원	
	“	“	박00	“	“	1	18,480원	
	“	“	한00	“	“	1	18,480원	
대구청	2004	남북교류법	김00	참고인조사	참고인	1	37,200원	
	“	“	정00	“	“	1	21,000원	
인천청	2004	조선우표구매	이00	참고인조사	참고인	1	38,000원	
	“	“	엄00	“	“	1	27,800원	
	“	“	박00	“	“	1	48,800원	

이 영 순 의원

1. 경찰청 및 지방청 도·감청 장비 현황
2. 경찰청 도·감청 인력 운용 현황(지방청 포함)
3. 각 국별(지방청포함) 및 범죄유형별 도·감청 현황('01~'05.6.30)
4. 도·감청후 대상자에게 통보한 통보 현황 및 관련 기록 대장
5. 이동통신사에 의뢰한 범죄유형별 통화내역 조회와 위치파악 요청 현황 결과('01~'05.6)

※ 담당자 : 경찰청 수사과 경위 이광언 (313-0746)

1. 경찰청 감청 장비 보유 현황

가. 경찰청, 지방청 장비 보유 현황

구분	보유 대수	장비명	주요기능	사용부서	구입년도	제조사	단가	사용 연수
계	675							
본 청	33	KD2010 KD2200 <u>KD3080</u>	전화녹음	수사,보안, 외사	'96.5.18~ '99.1.8	한국텔콤	160만원 250만원 <u>8,579만원</u>	5년 이상
서울	80	KD2010 KD2200	전화녹음	수사,보안, 외사	'96.5.18~ '99.1.8	한국텔콤	160만원 250만원	5년 이상
부산	42							
대구	25							
인천	32							
울산	18							
경기	80							
강원	43							
충북	34							
충남	56							
전북	49							
전남	84							
경북	53							
경남	38							
제주	8							

나. 경찰청, 지방청 감청 장비 폐기 현황('96.1 ~ '05.6까지)

(단위 : 대)

구분	폐기년도	수량	장비명	주요기능	사용부서	구입년도	구 매 처	구입단가	사용년수	비고
계		119								
본청	'04.4	2	KD2010	전화녹음	보안	'96	한국텔콤	160만원	8	
	'04.4	3	KD2200	"	"	'97		250만원	7	
	'05.7	2	KD2010		과학수사	'96		160만원	9	
서울	'05.4	33	"	"	형사과	'96		"	9	
부산	'05.7	16	"	"	"	'96		"	9	
대구	'03.6	10	"	"	수사과	'96		"	7	
인천	'02.6	1	"	"	보안과	'96		"	6	
강원	'04.8	10	"	"	수사과	'96		"	8	
경북	'03.6	18	"	"	수사과	'96		"	7	
경남	'05.5	17	"	"	"	'96		"	9	
	'05.3	5	KD2200	"	보안과	'97		250만원	8	
제주	'01.5	2	"	"	수사과	'96		"	6	

다. 2005년도 경찰청(지방청 포함) 감청 장비 예산 요구 내역

장비명	주요기능	사용부서	구입목적	구매처	구입예정 단가	비고
없음						

※ 경찰청은 1999. 1. 8.일 이후 감청장비를 구입하지 않음.

2. 경찰청 감청 인력 운용 현황(지방청포함)

: 감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음

3. 각 국별(지방청포함) 및 범죄유형별 감청 현황 ('01 ~ '05.6.30)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감금·협박	약취·유인	마약	국가·보안	기타
2005년 (1~6月)	82	24	2	1	2	1		47	4
본 청	43							43	
서 울	8	1	1	1				4	1
부 산	5	4							1
대 구	1		1						
인 천	2					1			1
울 산									
경 기	5	3			1				1
강 원	5	5							
충 북	1	1							
충 남	3	2			1				
전 북	1	1							
전 남	2	2							
경 북									
경 남	6	6							
제 주									

4. 감청 후 대상자에게 통보한 통보현황 및 관련기록 대장

(‘05. 8. 12.기준)

	감청현황	통 지	미 통지	미통지사유
2004년	310	123	187	수사중, 대상자사망 등
2005년	82	19	63	

5. 통신사실확인자료 유형별(유선, 무선, 인터넷 등) 구분 현황

○ 2002~2005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연도 \ 구분	총 계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PC 통신
2002년 (4.1~12.31.)	61,257	10,325	39,875	11,057
2003년	121,994	19,605	77,421	24,968
2004년	187,317	29,587	119,760	37,970
2005년 (1.1~6.30.)	128,628	17,975	87,041	23,612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통신제한조치수탁집행대장 사본
(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 통신제한조치수탁집행대장 사본(2002. 1.~2005. 6.)

단순 통계자료를 제외한, 통신수사와 관련 작성된 제반 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에 의거,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2호(벌칙)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통신감청협조현황보고 사본
(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 통신감청협조현황보고 사본(2002. 1.~2005. 6.)
단순 통계자료를 제외한, 통신수사와 관련 작성된 제반 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에 의거,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2호(벌칙)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경찰소관 감청장비 사용 대장

○ 경찰소관 감청장비 사용 대장

단순 통계자료를 제외한, 통신수사와 관련 작성된 제반 서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에 의거,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2호(벌칙)

작성자 : 수사과 수사1계 경위 김지명
연락처 : 031-888-2166

통신제한조치 운용 ·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250100 경찰사무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부당 감청 집행

[처분요구내용] 서울지방경찰청 관하 동부경찰서가 1998. 1. 13.부터 1999. 7. 27.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에 사는 정××에 대한 감청을 집행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청대상은 같은 법에서 열거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감청기간도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초 감청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감청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경찰서는 감청대상자인 정××이 감청신청일로부터 10여년 전인 1989. 6월 장물취득 전과 사실이 있을 뿐 '검거대상 범죄혐의자의 초등학교 동창'에 불과한데도 위 정××과 그 가족의 통신내용을 1998. 1. 13.부터 1999. 7. 27.까지 18월 15일(560여일)동안 감청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감청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400300 전파방송관리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통신제한조치 위탁집행제도 운용 부적정

[처분요구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설비·장비부족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 감청업무 등 처리지침(정보통신부, 1998. 2. 19.)」 제1장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발·착신 전화번호 추적"과 "전자우편 내용 채록"은 통신사업자가 자사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감청을 집행한 후 그 집행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위탁형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여야 하는 수사기관 등이 집행위탁을 하지 않아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제한조치를 직접 집행하고도 실질적인 위탁기관에 소요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통신사업자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한 감청집행이 이루어질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400300 전파방송관리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긴급감청 집행 개시후 사후 허가서 제시 부적정

[처분요구내용] 경찰청과 일선 경찰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감청(통신제한조치 긴급처분)을 집행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고 있다.

감청집행기관에서 긴급감청을 집행한 후 사후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협조기관에서는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에 이를 기록할 수 없어 동 협조대장을 근거로 긴급감청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발표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감청집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원의 허가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허가내용을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경찰관서들은 1997년에는 175건의 사후허가서를 받아 95.4% 상당인 167건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였으나 1998년에는 263건의 긴급감청 사후 허가를 받고도 157건만 제시하였고, 1999년 상반기에는 사후에 85회의 긴급감청 허가를 받고도 통신사업자에게 48회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37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당수의 긴급감청 집행에 대해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고도 마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긴급감청 집행후 사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조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허가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400300 전파방송관리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통화사실유무 등 조회 부적정

[처분요구내용] 노원경찰서 등 10개 경찰관서에서는 1999. 4. 6.부터 1999. 11. 1. 까지 5개 전
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화사실유무 등을 조회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및 경찰관집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화사실유무 등을 조회할 때에는 1999. 9. 4.과 같은 해 9. 14. 경찰청장이 시달
한 「통화내역조회관련 지시」, 「통화번호 등 조회협조의뢰 관련 지시」에 따라 경
찰서장(지방청 과장 등 총경 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은 유관기관에 송부하
고 기안문은 협조의뢰철에 보관하며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노원경찰서가 1999. 10. 23. 통화내역 조회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시행문만을 작성하여 경찰서장 관인을 날인하여 노원전화국에 전화번호
2개에 대한 통화내역 등을 조회 요청하는 등 2개 경찰서에서는 내부 결재없이 수사
경찰관이 통화내역 등을 조회요청하였고,

광명경찰서 철산1파출소 등 8개 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에서는 기안문에는 없는 가입자의 전
화번호 8개와 43명의 명단을 해당 경찰서장의 결재가 끝난 시행문에 추
가하여 개봉전화국 등 2개 전화국에 조회 요청하였으며,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1개 파출소 포함)에서는 해당 경찰서장(총경)의 결재
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과장(경정)의 전결로 조회 요청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 ① 앞으로 통화사실유무 등을 조회할 때에는 총경 이상의 결재를 받은 내용대로
조회요청을 하도록 하고
- ②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400300 전파방송관리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성실근무

제 목: 불법·도청행위단속 등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에 기여

[처분요구내용] 가. 경찰청 수사국 지능과 경정 박상용의 경우

1997. 3. 29.부터 1999. 2. 19.까지 사회경제사범 수사기획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심부름센터 등에서 도청행위를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심부름센터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기 위하여 주요 불법행위 사례와 실태, 중점 단속대상, 수사요령 및 착안사항과 적용법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에 개인의 소재탐지·사생활 침해행위와 불법 도청행위 계 259건 347명을 검거하여 이 중 1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3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나. 위 같은 과 경정 정철수의 경우

심부름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요령과 기법을 연구·시달하여 불법 도청행위 75건 118명 등 계 267건 386명을 검거하여 이 중 1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7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사람들에게는 표창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290300 방법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긴급감청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내용]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12개 경찰관서는 1998. 2. 6.부터 1999. 8. 28.까지 긴급 감청을 집행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전기통신 감청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감청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명시된 소속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긴급감청을 집행한 뒤 24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통신제한조치 협조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중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을지전화국 등 4개 전화국에 긴급감청 협조를 요청하여 짧게는 21시간 30분, 길게는 36시간 동안 4개 전화번호에 대해 긴급감청을 집행하였다.

또한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9개 경찰관서는 긴급감청 집행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24시간을 초과하여 짧게는 7시간, 길게는 24시간 동안 계속 57개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감청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 ① 앞으로 긴급감청을 할 때에는 기관장 확인서와 검사 지휘서 제시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들에게는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290300 방법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감청허가 청구 및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내용] 경찰청 등 7개 경찰관서는 1997. 7. 5.부터 1998. 12. 2.까지 총 38회에 걸쳐 감청을 집행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청을 집행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내에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감청허가서를 발부받기 하루 전인 1998. 9. 15. 동작전화국의 협조로 감청전용회선을 구성하여 1일 미리 감청을 집행하였고, 성북경찰서 등 3개 경찰관서는 대방전화국 등 3개 전화국의 협조로 1997. 11. 19.부터 1999. 3. 2.까지 3회에 걸쳐 법원허가기간보다 길게는 6일, 짧게는 1일을 더 초과하여 감청을 집행하였다.

또한 인천중부경찰서 등 3개 경찰관서는 1997. 7. 5.부터 1998. 7. 27.까지 4회에 걸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범죄수사목적의 감청허가 제한기간(3월)보다 4일 내지 2월 26일이 초과하도록 경찰에 허가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 3개 법원으로부터 신청한 대로 허가를 받아 9개 전화번호에 대하여 허가제한기간인 3개월보다 짧게는 4일부터 길게는 2월 9일까지 초과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 ① 앞으로 감청을 집행할 때에는 법원허가서 내용대로 집행하고, 감청허가 신청시 허가기간제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②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업 무: 290300 방법 시 행 일 자: 2000.05.12
처분요구기관: 127000000000 경찰청 처분요구종류: 통보
제 목: 감청설비(전화녹음기 등)구매활용 부적정

[처분요구내용] 경찰청(수사국 감식과)과 충남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은 해마다 감청설비 구매계획을 마련하여 전화녹음기 등을 구매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청설비 납품 검사를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판매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경찰청 보안과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 24대를 1996. 12. 30.납품받아 1999. 12. 23.현재까지 미인가상태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청 감식과 등 7개 경찰관서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전화녹음기 134대를 1998. 7. 3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구입하여 짚개는 25일, 길개는 5월 25일 동안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청설비를 사용하였다.

범죄수사에 활용할 전화녹음기 등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정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구매할 때에는 사전에 실제 장비사용 부서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연도중에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특정장비를 추가 구매할 때에는 그 장비에 대한 불가피한 추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도

경찰청 감식과는 장비사용 부서의 수요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전화녹음기 등을 연도중에 감식장비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구매하거나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구매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 ① 앞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판매 인가를 받은 감청설비를 구매하고
- ② 감청설비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수요부서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립하고, 각 경찰관서별 감청장비는 각 지방청별로 탄력적으로 통합 운용하도록 하며
- ③ 관련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03호, 시행일 2005.8.27, 현재시행법령확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지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㉑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㉒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

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② 삭제 <2004.1.29>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사업계획·기술·재정능력·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양수·승계·휴지·폐지 및 그 신고, 등록업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제10조의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9]

㉮ 제10조의5 (등록의 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9]

㉮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개정 2005.5.26>)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 ④삭제 <2005.5.26>
-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5.26>
- [본조신설 2001.12.29]
- ㉮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본조신설 2001.12.29]
- ㉮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5.26]
- ㉮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 ③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5.26]
- ㉮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5.26]
- ㉮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 ㉮ 제15조 (국회의 통제) ①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1.12.29]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극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1.12.29]

㉮ 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12.29]

㉮ 제18조 (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제4650호, 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㉑ 부칙(관세법) <제6305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8조 생략

㉒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6346호, 2001. 1. 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㉓ 부칙 <제6546호, 2001.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㉔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㉕ 부칙 <제7138호, 2004.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타당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㉖ 부칙 <제7371호, 2005.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㉗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2> 생략

<1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㉘ 부칙 <제7503호, 2005. 5. 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